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이를 승낙받아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판매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고 합니다)에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5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 1 전자금융거래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고 합니다)가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개별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별약관에 동의한 다음 회사가 요구하는 항목들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하여 신청절차 상 가입완료가 표시된 시점에 성립됩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제출한 서류 또는 정보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4. 가입신청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5.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이전에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6. 이용정지를 당한 회원이 그 이용정지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가입 신청하는 경우

7.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8.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가입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에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가 본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1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1 회원이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 3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시간)

- 1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수수료)

- 1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 2 회사는 수수료(율)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 (접근매체의 발급)

- 1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10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회원은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회사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역삼동, 오렌지플래닛)
- 전자우편주소: cs@glinternational.com
- 전화번호 : 1588-8487

제12조 (오류의 정정)

-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2 회사는 제1항 및 제10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거래의 제한 등)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사전에 통보하고,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 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가 중단(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되어 사전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타인의 명이나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여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등록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4.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8.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2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연계 금융기관 등의 설비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전, 통신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뒤틀 판매자와의 계약종료,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폭동, 테러, 해킹, DDOS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4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가 중단(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 1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홈페이지 등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원정보의 제공 및 변경)

- 1 회사는 회원의 전자금융거래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 하에 회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전자금융거래계약 체결 및 이용을 위해 제공한 회원정보를 회원이 직접 전자적 장치에서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4 제3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해제, 해지 등)

- 1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금융거래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2 회원이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3 전자금융거래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스톤, 스톤으로 교환한 상품, 무상으로 제공된 락머니 등 개별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무상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회원이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3.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이 회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 혹은 부정하게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회원이 악의적으로 전자지급수단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회사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본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해지의사를 사후에

통지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전자금융거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회원과 판매자, 제휴사 등 간의 거래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단, 본 조 제4항 제5호의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에서 사용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스톤 등의 환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쿠폰에 해당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1 회원은 아래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등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역삼동, 오렌지플래닛)

-전화번호: 1588-8487

-전자우편주소: cs@glinternational.com

-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단, 해외판매자에 관한 분쟁처리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3 회원은 제13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60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1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5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4조 (약관 외 준칙)

-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관할)

- 1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10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